

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148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임.

2 주 요 골 자

- 보건소 설치 근거조항 개정 (안 제1조 참조)

"보건소법시행령 제5조"를 "제6조"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무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청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조

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조

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조

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조

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조

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24조

신,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보건법	제1조(목적)이
제2조및 <u>동법시행령 제5조의</u>	 <u>동법시행령 제6조의</u>
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및보건지소	
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 한다.